

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4791 판결 [공사대금 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다2291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47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소91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최화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

변론 종결 2021. 3. 12

판결 선고 2021. 4. 9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소916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 1심 공동피고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 50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시흥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대금 18,50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본부장인 E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호텔 본부장의 직함을 사용하게 하고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맡겼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또한 E의 위 계약체결이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의 아들인 C가 2018. 7. 11. E에게 원고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E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도장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되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 2호증, 갑제 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는 2017. 2. 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이름을 빌린 E와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공사계약서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도장공사에 관한 원고의 견적서에는 상대방으로 G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견적서 밑부분에는 수기로 *G본부장 E'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아들 C가 ' 원고가 도장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도장 공사를 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불과하며 피고가 진술한 것도 아니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주장,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주장 및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러한 주장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원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원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김정운 판사 김재학